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분야별 내역의 업무관장 부서에서
“지방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보건과”를 “보건행정과”로,
“원예유통과”를 “농업유통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사회진흥과소관 및 청소년과 소관을
삭제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환경관리과 소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환경지도과 소관 제19호 다음에 제20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관리과	1	◦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2	◦ 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 장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분야별 일 번	련 호	사 무 명	근거법령
환경관리과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다.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 라.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마. 공동방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쇄신고 수리 바. 가동개시의 신고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의 수리, 가동상태 점검 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 아.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임신고의 수리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동법 제10조 동법 제10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항 동법 제13조 제3항 동법 제21조
3	○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토양정밀 조사의 실시 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 라. 손실보상 마. 오염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4항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5조
4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 다음 사항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나.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등 조치명령 및 사용 중지 명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과 시설 및 비치자료의 검사	동법 제13조
	5	◦ 토양보전대책 지역과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대책계획 수립 시행	동법 제18조 제1항
		나.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사업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실시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 토지이용 및 시설의 설치 제한	동법 제20조
		라.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시설의 철거명령	동법 제21조 제3항
	6	◦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24조
	7	◦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32조
환경지도과	20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영업 정지명령	동법 제28조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동법 제31조 제3항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법 제32조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동법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환경지도과		사.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 수리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57조 동법 제63조 제3항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73호 다음에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보건행정과	74	◦ 사립의 결핵진료소, 요양소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제16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1	◦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의 조사 등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지하수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조, 제4조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 및 조치명령	동법 제8조 제1항
		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및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20조
		마.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 철거명령 및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9조
		바. 지하수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사.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방지 명령	동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아.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 (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및 시료채취 후 시료봉인·인계	동법 제16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 규칙 제8조
		차. 지하수개발 이용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동법 제17조
		카.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일시사용 및 장애물제거 관련허가, 변경 제거시 손실보상	동법 제18조, 제19조
		타. 과태료 부과 징수, 의견진술기회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질관리과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3조3호는 제외) 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 	<p>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p> <p>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p>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39호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39	◦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말소	어선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72조
	40	◦ 어선건조·개조의 발주허가 및 취소, 발주허가내용 통보, 건조·개조의 중지 및 어선·어선설비 제거 명령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41	◦ 어선현장 확인업무	어선법 제11조
	42	◦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축산과	43	◦ 내수면어업 면허, 기간연장허가 및 시설제거 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44	◦ 방치어선의 관리, 처분과 내용 공고, 제거명령 및 필요조치 (대집행)	어선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45	◦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경제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장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나. 시장개설자에 대한 권고 및 조치명령 다. 개업 등의 신고 수리 라. 개설자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동법 제12조, 제13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과		마.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바. 과징금 처분 사. 청문 아.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동법시 행령 제10조, 제11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3조 제2항 동법 제51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지역개발과	1	○ 용도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승인신청·고시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

-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사용 권고

동법 제21조

- 국토이용관리법령 및 관계법령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동법 제26조

- 온천수 굴착, 동력장치설치 이용 허가

온천법 제5조, 제8조
제11조

-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협의

도시계획법 제8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6 ○ 토지 형질변경 준공검사	토지형질변경등행정 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7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 사무	
	가. 지방공단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의 고시	통법 제19조의2
	다.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	동법 제21조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 한 협의	동법 제26조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 에 관한 협의	동법 제27조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 인가 처리를 위한 검사의뢰	동법 제37조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37조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 허가	동법 제37조
	자.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 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동법 제4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시개발과	8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감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9	◦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동법 제47조
	10	◦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동법 제76조의2 제2항
	11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재개발법 제10조, 제11조
	12	◦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도시개발법 제62조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치수과 소관 제87호 내지 95호를 삭제 한다

(별표1) 권한위임사무중 교통행정과 소관 제18호 다음에 제19호 내지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0	<p>나.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 적성 검사 실시</p> <p>다.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발급</p> <p>라.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재 교부</p> <p>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대장 기재</p> <p>바.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증 반납 처리</p> <p>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p> <p>◦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 교부</p> <p>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p> <p>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p> <p>라. 등록 이전신고 처리</p>	<p>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p> <p>동법 제26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 규칙 제 77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 규칙 제78조</p> <p>동법 제26조, 동법시행 규칙 제80조</p> <p>동법 제28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p> <p>동법시행규칙 제5조</p> <p>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 7조</p> <p>동법시행령 제6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마.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바. 등록의 개정 처리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사. 건설기계등록 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9조, 제10조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령 제9조
	자.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명령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7조
	차.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재부착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 칙 제18조
	카.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반납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 칙 제19조
	타.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	동법 제11조
	파. 등록번호표 봉인자지정 및 지정 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8조, 동법시행 규칙 제15조, 제16조
21	◦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동법시행 규칙 제39조, 제40조
22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 지정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3	◦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 제17조, 동법시행 규칙 제41조
24	◦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처분, 화물 운송의 금지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령 제91조

분야별	일련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행정과	25	◦ 보고 및 검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26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동법 제36조
	27	◦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
	28	◦ 건설기계 저당권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기계 저당권의 등록 나. 저당권의 이전 다. 저당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처리 라. 저당권 등록의 개정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6년 5월 22일

제안자 : 김춘식 의원 외 6인

1. 수정이유

- 시·군으로 위임하는 행정사무위임 내용의 사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시행상의 착오를 줄여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위법조항을 명시하여 위임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2. 수정주요골자

-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 관리법 제3조3호는 제외)
(안 수질관리과 소관사무제2호(가)항
에 단서 자구 삽입)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사무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권한위임 사무 중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수질관리과 소관 2호의 (가) 항 조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3호는 제외)" 를 추가한다.